

⑤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사일리지로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류(예시)

작업명	기계·장비명(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장비	베일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cm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cm*100cm 내외)
	적재기	적재기(로더, 그레플 포함)
부속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자부담 60%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경영체) 1세트당 지원 한도 15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옥수수, 총채벌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수확면적 20ha당 1세트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임야 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

-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5ha일 경우
 - 2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75%)만큼 사업비 조정(200백만원 × 75% = 112.5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50ha이상을 직접 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작업별 기종(브랜드, 규격 등)**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예) A업체의 예취기 B모델을 사용하다 트랙터와 호환 문제 등으로 교체를 희망할 시 A업체의 C모델 또는 D업체의 E모델 등으로만 지원 가능

○ (용자지원)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용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용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용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용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비치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약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함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조)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 [서식 2]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 조사료 재배 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및 조치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구 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 교부일	5년 (트랙터 8년)	양도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 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준용 처리

- (시·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지원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III

사업추진체계(공통)

※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1. 사업 신청단계

농식품부

- 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6~7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7~8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9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말까지)

2. 사업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 등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미개최 시 보조금 삭감 가능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최종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지원제한 및 후순위 지원(예시)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3.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22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 i)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ii)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iii)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군)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 지원분 회수 조치
- 최종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비율 (70~80%)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추진에 참고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최종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8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 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 시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 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 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과 계약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전년도 실집행율 등을 참고하여 '24년 예산을 배정하고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수시)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및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확인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시·도별 자체 집행을 제고 방안 추진
 - * 예) 실집행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및 보고 등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최종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는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협조
- 사업완료시 [서식 3] 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 취소 등 조치

○ 보조(용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가 용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보 고

- 시·군은 [서식 1~8]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식		대	m ²	
		(톤)			(톤)			
<p>(주)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 당해 법인 명이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 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